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1254

발의연월일 : 2014. 7. 24.

발의자 : 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심상정 · 김제남 · 박홍근
안민석 · 박남춘 · 윤관석 · 장하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하여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들 임원의 임명과 이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인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2013도 11735)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의 이사장의 학교법인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영과 이를 통한 사립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본래의 건학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 경영권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경영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였을 때
5. 임원 선임을 대가로 재임중인 임원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면을 위한 이사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면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선임 승인 및 승인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표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8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생략) <신설>	第18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第20條(任員の選任과任期) ① (생략) ② 任員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20條(任員の選任과任期)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第20條의2(任員就任의承認取消) ① 任員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第20條의2(任員就任의承認取消) ① _____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였을 때 5. 임원 선임을 대가로 재임중인 임원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자
6. · 7. (생략) ②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1313

발의연월일 : 2014. 8. 5.

발의자 : 김광진 · 강창일 · 김우남 · 박민수 · 유기홍 · 이목희
이상직 · 임수경 · 장하나 · 정성호 · 정청래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절학기, 교외활동 학점인정제도, 8학기 수료 이후 졸업가능 외국어시험점수의 획득 등으로 인해 휴학 중인 상태에서도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학 중인 자'에게만 졸업을 허가한다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졸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추가로 등록하여 다닌 뒤에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회초년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나를 졸업 허

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대학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휴학생에게도 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50조제1항·제54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람에게는’을 ‘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u>사람</u> 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⑥ (생략)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_____ _____ <u>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에게</u> _____. ②~⑥ (현행과 같음)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u>사람</u> 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생략)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_____ <u>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u>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학위의 수여)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u>사람</u> 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③ (생략)	제54조(학위의 수여) ① _____ <u>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u> _____.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학위의 수여)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u>사람</u> 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③ (생략)	제58조(학위의 수여) ① _____ <u>사람(휴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u> _____. ②·③ (현행과 같음)